

제273회 성주군의회(임시회) 의안 검토보고서

| 〈 의 안 목 록 〉 | 〈 발 의 자 〉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○ 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【도희재의원외6인】 |
| ○ 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| 【구교강의원외6인】 |
| ○ 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| 【김경호의원외6인】 |
| ○ 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| 【이화숙의원외6인】 |



성 주 군 의 회

성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 안 자 : 도회재 의원 외 6인

2. 개정이유

-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하여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제17조 제1항 중 “각1인”을 “위원장 1인, 부위원장 2인(여성위원장 1인)”으로, “3인 이내”를 “2인 이상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“1회”를 “2회”로 변경

4. 참고사항

- 예고기간 : 2023. 4. 18. ~ 4. 24.(의견없음)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성별 균형 및 대표성을 제고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구교강 의원 외 6인

2. 제정 이유

- 성주군 관내 거주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군의 지원을 확대·구체화하고 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(안 제3조 ~ 안 제4조)
- 예우 및 홍보, 우대 및 확인(안 제5조 ~ 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- 예고기간 : 2023. 4. 28. ~ 5. 3.(의견없음)
-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병역법」 제82조에 의거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성주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김경호 의원 외 6인

2. 제정 이유

-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, 운영(안 제2조 ~ 안 제3조)
-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(안 제4조)
-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(안 제5조)
- 노후·유희시설의 활용범위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예고기간 : 2023. 4. 28. ~ 5. 3.(의견없음)
- 관계법령 :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」, 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저출산, 고령화,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성주군 실정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인구정책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운영, 기본계획 수립, 문화·관광·체육시설 설치, 노후·유휴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성주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이화숙 의원 외 6인

2. 제정 이유

- 성주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, 대상(안 제1조 ~ 제3조)
- 준수 책무,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4조 ~ 제7조)
- 장기요양기관장 책무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- 예고기간 : 2023. 4. 18. ~ 4. 24.(의견없음)
- 관계법령 :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」, 「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」, 「노인복지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성주군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- 우리군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는 570여명으로, 양로시설 1개소 · 요양시설 9개소 · 재가시설 11개소 · 장기요양기관 18개소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- 검토결과,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열악한 근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